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運營委員會—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의회사무국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사무국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審議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여 '95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감사기간

1994. 11. 28(월) - 12. 3(일)까지 (6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각호 해당기관

- 구의회사무국

4. 감사실시경과(감사반, 대상부서, 장소, 방법 등 기타)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방법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정종태 간사: 배기한 위원: 김대섭 김형기 안주영 윤태봉 이영규 최락희 한기태	구의회 사무국	의회 소회의실	업무보고 자료확인 공개질의 감사	운영위원회 소관전문위원 사무국직원 (2명) 속기사(1명)

5. 주요감사 실시내용

과별	감사사항	비고
구의회사무국	○ 의정활동 현황 및 실적확인 ○ 자료발간 및 구민방청 등 대시민 홍보사항 ○ 의정보고회 추진사항 ○ '94년도 예산 및 집행 현황 ○ 사무국직제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구의회사무국	제목: 의정활동홍보 및 예산집행실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개최시 의회게시판에 집회공고를 하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가 적어 의회의 방청 등 주민참여가 미흡한 편임. (처리 의견)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나 회의소집이 빈번해짐에 따라 각종 구정홍보지, 또는 반상회홍보, 구·동게시판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 行政財務委員會 —

94년 12월 일  
행정재무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區政을 감사함으로써 區政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예산의 효율적인 審議를 위한 각종 자료를 확보하여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2. 감사기간

1994. 11. 28(월) - 12. 3(토)까지 (6일간)

### 3. 감사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각호 해당 기관  
• 3실, 총무국, 재무국, 동사무소

### 4. 감사위원 편성

위원장	간사	위원
김종구	한기태	고광택, 김대섭, 이강위, 이영규, 임병섭, 임창수, 정준태, 정준탁, 홍상기,

###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자	감사대상기	장소	감사방법	비고
94. 11. 28(월)	3실	영등포구청	현황보고	* 필요시 동사무소 확인 감사
94. 12. 1(목) 10:00~	총무국 재무국	기획상황실	자료확인 개별감사	
94. 12. 2(금)	3실	"	합동감사	질의답변
94. 12. 3(토) 10:00~	총무국 재무국		질의답변	

### 6.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감사사항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 의견
(시민봉사실) ○ 민원상담관 운영의 문제점	94. 11. 30일 오후 13:30 분경 민원상담관 이경수는 혼인신고 하러 온 민원인에게 작성요령	○ 영등포구 민원상담관 모두에게 친절, 봉사, 정신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사항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 의견															
	무료대서 등을 친절하게 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그러하지 못하여 지적하는 감사위원에게 오히려 항의하는 사례																
(감사실) - 환경순찰의 문제점	○ 순찰적출 → 시정지시 (구, 동) → 시정조치 → 결과보고 → 확인	- 시민불편 사항 적출 즉시 긴급정비코자 정비부서에 통보, 신속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정비부서간 연락체계 유지를 위한 휴대용 전화기 확보 요망되며, 긴급하게 기동성 유지로 조기적출하여 신속한 정비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및 기사배치가 요구됨.															
- 비위관련공무원의 조치사항	○ 영등포구청 직원 1,662명중 94.11~10.31 현재까지 비위관련 조치내용을 보면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0;"> <thead> <tr> <th>구분</th> <th>정계</th> <th>훈계</th> <th>경고</th> <th>주의</th> </tr> </thead> <tbody> <tr> <td>자체</td> <td>28</td> <td>236</td> <td>3</td> <td>0</td> </tr> <tr> <td>외부기관</td> <td>50</td> <td>157</td> <td>19</td> <td>82</td> </tr> </tbody> </table> 외부기관 조치 의뢰의 약 115%(구자체 심의)를 상회함은 감사기능이 소홀하게 보이게 됨. 특히 징계조치 사항은 178%가 외부기관에서 조치의뢰이고 보면 더욱 감사기능의 활성화가 요청됨.	구분	정계	훈계	경고	주의	자체	28	236	3	0	외부기관	50	157	19	82	- 당구청의 감사실 상급자 등은 성실한 공무원으로 앞서가는 구청이 되도록하여 비위의 근절과 품위유지에 적극 노력토록 할 것이며, 훈계조치는 당구청에서 유독 150%로 조치함은 개과천선의 효과를 보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으나 잘 못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정계	훈계	경고	주의													
자체	28	236	3	0													
외부기관	50	157	19	82													
(기획예산과) - 93 사고이월액 (세출부분)	○ 95년 예산편성에 편법에 의하여 사고이월액 부분에서 다시 예산편성한 부분과 당연히 다시 예산에 반영한 부분도 있고 하나 많은 사고이월	○ 사전계획이 없거나 등한시한 계획을 토대로 공사기간과 총분한 계획을 감안치 않고 사업을 추진한 원인인 바,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															

감사사항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의견	감사사항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의견
	액(374,874만원) 발생케 됨을 부당함을 지적함.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할 것.		사표가 10. 17 제출되었음에도 면담하지 않고 즉시 사표수리 하였음.	
-예산편성상 문제점	신길동 3741-4 대지 134㎡ 임대료 총 8,262,250원을 착오기재 예산편성안에 2,384,810원을 누락기재한 사례가 있음	○전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이기하여 기재하였으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매년 예산편성시 성실한 자료에 의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동근무복 계약문제	○동직원 근무복 구입시 한국 피복 공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하여 구입한 사례	-각 등에 예산배정하여 동별로 구입하여 착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예산전용의 문제점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부득이한 예산 추가요구가 있는 경우 구의회 의 승인을 득한 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전용금액이 과다한 편임.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적용하여 법에 위배된 전용을 하지 말 것이며 예산전용에 신중을 기해주시 바람.	(민방위과) -동반장 교육 여비에 관한 사항	○통대장 특별교육여비 7,000×715=5,005,000원 실제통대장 684명인데 31명에 대하여 과다지급	-통대장 현원도 틀리고 예산은 7,000원씩 책정하고 여비는 5,000원씩 지급한 사례
(총무과) -인사문제	○금회 승진자중 고령자에 속하는 직원을 격무부서에 보직을 맡기는 사례	-가급적 연령과 능력을 감안하여 보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민방위신고 의무위반 및 교육훈련위반자 과태료 부과문제	○위반자 대부분이 빈곤한 자로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너무 과중하고 위반자 조사확인 과 금액 결정 및 부과로 이원화 되어 있음.	과태료 금액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고 과태료 조정 및 부과 절차를 일원화해서 동사무소에서 위반자 조사확인 →조정부과 →수납부 보고는 항상 민방위과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사문제	○94. 11. 1자로 직제 개편으로 인한 인사에서 동사무장이 계장으로 보직개편되었는데 사무장을 재직하고 있는 그대로 동계장으로 임명하니 당사자의 의기소침은 물론 직원들과의 화합에도 문제가 있어 행정능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기구개편인 바 진출제한에도 구애됨이 없으므로 상호 진출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당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재무과) -정수물품 조달구매에 관한 사항	정수물품 조달구매시 물품구매 납품계약 기일이 평균 1개월 이상 소요됨.	조달청 구매 가격은 저렴해서 좋으나 납품 기일이 너무 길어서 필요할 때 바로 수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품기일 단축이 요망됨.
-면직공무원 처리 문제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관련 부서 상급자나 인사담당 공무원의 면담 한번 없이 사표 처리한 사례, 94. 10. 19 의원면직환위생과 김용하의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급자나 인사 담당공무원은 최근동향을 파악하고 면담을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지판매수수료 문제	○94년도 수입중지 총 판매액 702,151,000원에 대하여 위탁판매수수료 3/100인 20,451,000원을 지급하였음은 구세입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본건에 관하여는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인중기 등을 조속히 설치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수수료 등 절감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구유재산 매각 동의안의 처리	○94 구유재산 매각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함. 『예』 대립동 603-67, 603-56의 매각에 있	-업무추진에 있어서 협의부서에서는 세밀한 검토를 거쳐 주관부서에 회시하여 행정력 낭비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감사사항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 의견	감사사항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 의견	
-구유재산 관리계획	어서 재무과에서 주택과와 협의를 하였으나, 현재 매각 대상건지는 대립3등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로 주택과에 보고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매각해서는 안되는 지역임에도 매각을 추진한 사례		공사 및 물품 구매사항 조사	94. 10. 31 현재 총건수 678건(일반회계 638건 11,183,328천원, 특별회계 40건 1,371,702천원) 총액 12,555,030천원 중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대략적인 경우에는 예산액에서 예정가격이 60%에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액은 절반액이 좀 상회하는 경우가 지적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구재정을 절약하는 이익도 있으나 상호공존하는 일반 성실한 공사와 계약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적정가격의 공사계약과 구매가 요구되고 있다.	①예산액의 공정한 설정 ②심한 경쟁입찰에 부응 저렴한 가격 낙찰만을 우선해서는 안되었음. ③우수한 자재, 우수한 인력, 성실한 공사 및 구매로 부실한 공사와 저렴한 물품구매를 지양토록.	
	○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미수립 및 구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음(지방재정법 제77조, 영등포구 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대한 미이행)	○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95년도 예산편성에 정확한 세입을 반영토록 할 것.		(세무 1과) -채납세금 징수사항	○ 시세 및 구세의 과년도 채납세금 180억 7400원에 대하여 징수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공무원의 채납세금 징수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공무원에게 독려하여 징수토록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치 않았음에도 94년도 예산편성시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1,171,200,000원을 책정하고 실제수입은 약 70,000,000원이었으므로 세입부분에서 11억이상을 허수책정한 사실이 있음			-일반회계 세수와 특별회계 세수에 대하여	○ 세외수입에서 총 채납액 1,963,587,000원(217,128건)과 결손처분액이 617건에 53,252천원됨은 문제점으로 되었으므로 매우 우려됨은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목표액과 조종액의 편차가 너무 크고(목표액 3,101,057천원 조정액 942,233천원) 여기에 징수액 3,659,966천원, 체납액 5,763,267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구세입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수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 부족으로 예산편성에 부적정 하며 건전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케 됨으로 모든 수입재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효율적이고 큰 편차 없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유지와 구유지에 대하여	○ 우리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와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 문제점	○ 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호 교환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인건비 문제	정부공사 인건비중 기술계통의 인부노임일당 3만원, 단순노임인부노임 14,300원 지급하고 있는 바, 일반인 공사는 7만원 또는 8만원을 받고 있으며 단순노임도 4~5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임.	상부관청에 계속 건의하여 현실 노임가에 가깝도록 건의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감사사항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 의견	감사사항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 의견																							
-채납자 징수 대책에 관한 사항	<p>○'94. 10. 31 현재 채납총액이 18,074백만원인 바, 결손처분</p> <p>1 결손처분 예정액 (법인소득할) 1,570,933,289원의 발생문제는 (500만원이상 고액만도) 우리구청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주무부서인 세무서에서 이관 처리하여 오는 과정에서 기히 법인이 해산되고 집행능력을 상실하므로 구세징수에 막대한 결손을 보이고 있으며,</p> <p>2 개인별 고액채납자 623명중 500만원이상 고액채납자 113명이 채납한 금액만도 2,162,473,250원으로 이중에는 5년 시효만료자 윤병을 (대림동 986-4거주) 이 129,796,580원도 있는 실정임.</p>	<p>1 문제점: 법인인 경우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즉 세무서에서 법인세 징수시에 함께 법인소득할을 징수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요망</p> <p>-왜냐하면 세무서에서 당 구청에 이관하여 조치하는 동안 부실기업은 도산하여 징수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임 (개인 고액채납자의 경우)</p> <p>2 세무직 공무원이외에 타 부서 공무원에게도 징수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실적이 부진한 것은 당 구청 세수징수에 소홀한 점이 있음. 그러므로 고액채납자 1,000만원 이상에게 사실확인 협조요청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56명에게 사실확인서를 송부했음</p>	<p>○'93. 1. 1 현재 등록대수 : 27,488</p> <table border="1"> <tr> <td></td> <td>부과</td> <td>징수</td> <td>채납</td> </tr> <tr> <td>등록세</td> <td>9,107</td> <td>9,107</td> <td>0</td> </tr> <tr> <td>취득세</td> <td>7,082</td> <td>9,157</td> <td>644</td> </tr> </table> <p>○'94. 10. 31 현재 등록대수 : 24,030</p> <table border="1"> <tr> <td></td> <td>부과</td> <td>징수</td> <td>채납</td> </tr> <tr> <td>등록세</td> <td>9,273</td> <td>9,157</td> <td>116</td> </tr> <tr> <td>취득세</td> <td>6,855</td> <td>5,622</td> <td>1,073</td> </tr> </table>		부과	징수	채납	등록세	9,107	9,107	0	취득세	7,082	9,157	644		부과	징수	채납	등록세	9,273	9,157	116	취득세	6,855	5,622	1,073	<p>앞으로 당초 등록시에 내야할 등록세만을 내고 등록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에 의한 적출된 증가세가 채납되고 있음</p> <p>○조치 차량대장에만 압류조치하고 있음</p> <p>○시정요구 차량대장에 압류조치는 현실적으로 징세효과에 소득이 부합</p> <p>○처리 의견 방문 징세조치</p>
	부과	징수	채납																									
등록세	9,107	9,107	0																									
취득세	7,082	9,157	644																									
	부과	징수	채납																									
등록세	9,273	9,157	116																									
취득세	6,855	5,622	1,073																									
			(세무 2과) -압류재산 공개 및 환가	○총채납액중 고액채납 1건만 공매처분하였음	○고액채납자 1건의 재산만 압류할 것이 아니라 고액채납자 모두 공매처분 결정해서 채납이 일소 되도록 조치바람																							
			(건축과) -건축물 멸실 신고 사항	○각 동사무소에서 건축물을 멸실 신고처리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은 멸실신고를 필한 후에 건축허가가 나온다는 실무자의 설명이나 이 문제가 일관성 없이 공무원간에도 구구한 이론이 제기되고 있음.	-도시정비국에서는 구청장 명의로 건축물 멸실신고에 대한 법적 해석을 각 동사무소에 시달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차량등록, 등록세 과세 및 징수현황	<p>○'94. 10. 31 현재 (단위: 백만원) 등록대수 : 54,485</p> <table border="1"> <tr> <td></td> <td>부과</td> <td>징수</td> <td>채납</td> </tr> <tr> <td>등록세</td> <td>19,813</td> <td>19,697</td> <td>116</td> </tr> <tr> <td>취득세</td> <td>16,705</td> <td>14,531</td> <td>2,174</td> </tr> </table> <p>○'92. 7. 1 현재 등록대수 : 2,967</p> <table border="1"> <tr> <td></td> <td>부과</td> <td>징수</td> <td>채납</td> </tr> <tr> <td>등록세</td> <td>1,433</td> <td>1,433</td> <td>0</td> </tr> <tr> <td>취득세</td> <td>2,928</td> <td>2,464</td> <td>464</td> </tr> </table>		부과	징수	채납	등록세	19,813	19,697	116	취득세	16,705	14,531	2,174		부과	징수	채납	등록세	1,433	1,433	0	취득세	2,928	2,464	464	<p>○시책 1가구 1차량으로 운행질서를 유지키 위한 정부시책임</p> <p>○현황 1가구 1차량인 경우에 등록세는 절차상 등록세를 납부해야만 차량이 등록되므로 채납이 불가능하나, 1가구 1차량 시책에 의한 차량등록에 있어서 등록자가 1가구 2개 이상을 고지하지</p>	<p>○건축과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건축직들이 세무행정을 잘 모르고 미숙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p>	<p>○이행강제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세무과에서 전문 공무원이 건축과로부터 자료만 받아서 총괄 집행하기 바람.</p>
	부과	징수	채납																									
등록세	19,813	19,697	116																									
취득세	16,705	14,531	2,174																									
	부과	징수	채납																									
등록세	1,433	1,433	0																									
취득세	2,928	2,464	464																									

감사사항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 의견	감사사항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 의견
(환경과) -환경개선비용부담금	93년도 1기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 실시에 있어 법률상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개의 건물을 임차인이 임대하고 있으므로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동세금 부담여부를 둘러싸고 시비가 일고 있는 실정임. 영등포구청에서 이세금의 부과와 징수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현황) 93. 1기분~94. 2기분 총부과건수: 21,538건 부과금액: 4,161,689,150원 징수건수: 19,624건 징수금액: 4,008,732,520원 미수건수: 1,914건 미수금액: 152,956,630원 ※미수금액이 총 부과금액의 27.2%에 해당하고 있으며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함.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의하면 환경청 장관은 유통소 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청 담당자가 말하는 건물주가 부담한다는 일방적인 말은 법해석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징수해야 할 담당자는 성실한 징수 및 임차인과의 불화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임차인의 용도에 따라 과세형편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건물주와 상의해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업무처리관계	제34조에 의거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일때는 점용료 감면 사유로 사료되어 미부과한 것이라는 답변이나 사용업체는 93년 성광건설로 443,808,000원 94년 중도건설(주)로 903,234,000원의 공사계약을 한 업체로 상기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임.	-각종 민원과 같이 지역 의견 사항도 가부내용을 각동에도 회신함으로써 지역 관계자 또는 주민에게 홍보, 설득의 효과뿐 아니라 민원처리의 형평에 맞다고 생각함.
(토목과) -준설토 중간집하장 설치 운영	○준설토 중간집하장이 대로변 사거리 코너 (도림2동)와 주거밀집지역(신길3동 APT, 대림3동 주택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인하여 민원을 유발하고 있으며, 중간집하장 사용업체에 대하여 하천부지 사용료 미부과하고 있음. (하수과 답변으로는 중간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하천부지로서 하천법	○준설토 중간집하장을 조속히 알맞은 장소로 옮기고 ○93년, 94년 사용업체에는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과토록 할 것.	(건설관리과) -기부재산에 대한 관리 사항	○87. 6. 20 KBS동 6개 직장 주택조합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신길 6동 4656번지 등 14개 필지에 사업승인 받을 때 -단지 주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그	○우성건설(주)측에 기부채납 관련서류를 확보하여 영등포구청에 제출토록 일정기간을 주어 통지해야 하며 이행치 않을시 행정처분의뢰, 소송제기 등 적절한 수단을

감사사항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 의견	감사사항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 의견
	<p>도로용지를 영등포구청에 기부체납토록 조건부로 하였으나, 아파트건립이 완료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시점까지 위와 같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자 영등포구청이 시공사인 우성건설(주)에게 조건이행부로 공증각서 제출과 소요경비 예치조건으로 89. 4. 11 사용승인을 했음</p> <p>-92. 5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됐으나 기부체납 대상토지 12개필지(2671㎡)중 1필지(196㎡)만 기부체납하고 그외는 미조치됨.</p> <p>-당시 우성건설(주)측에서는 12개 필지를 일괄 처분코자 기부체납 관련서류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받아 보관중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 이행못함.</p> <p>-영등포구청 주택과에서 89. 6~92. 10까지 6회에 걸쳐 우성건설(주)측에 각서 내용 이행을 촉구했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p>	<p>강구함으로써 당초 준공 조건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p>		<p>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회계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는 바,</p> <p>○문제점</p> <p>-아파트단지내에서는 각 경비원이 주시하는 속에서 마구 투기하지 않겠지만,</p> <p>-경비원의 감시가 없는 지역에서는 “쓰레기 투기” 사건이 난무하여 지역에 따라 쓰레기가 적체되고 있을 것이 예상되며, 이것은 새로운 골치덩어리문제가 야기되리라고 보며, 비닐봉지 구매가 부진할 경우 특별회계의 결손문제가 예기되고 있음.</p>	<p>극 홍보</p> <p>○이 제도의 정착을 위한 거구적인 홍보 조치</p>
			(공원녹지과)	<p>-문래동 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p> <p>○문래 근린공원 화단 경계석 및 인도와 공원화단 담장공사가 약 7년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지금에 와서 시설물이 위험을 초래케 되므로 1억이상의 예산을 돌려 재공사하고 있는 사례</p>	<p>-향후 어느 공사든 간에 설계부서 시공까지 완벽한 공사를 해서 예산의 낭비를 방지토록 할 것.</p>
(청 소 과)	<p>95. 1.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주민부담 비닐봉투구매”를 우리구청과 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간에</p>	<p>○통·반장 회의를 통한 쓰레기 종량제 홍보</p> <p>○마구 투기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대응조치하겠다는 뜻을 적</p>	(도시정비과)	<p>-체비지변상료 부과징수 문제</p> <p>○대림동 637번지 2306㎡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치 않고 있는 사례</p>	<p>위 부지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시 승인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변상금 징수나 재산권 확보가 요망됨.</p>
향후대책			-체비지변상금 부과문제	<p>○94년도 체비지 변상금 부과내역중 과세번호 1~187까지의 시</p>	<p>변상금 징수나 재산권 확보가 필요함.</p>

감사사항	현황 및 문제점	시정 및 처리의견
	체비지 18필지를 변상금 부과만하고 징수를 못하고 있는 사례	
(도림2동) -도로관리사항	○도림3 유수지열 도로 관리에 있어서 콘테이너 6대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자재 및 폐품을 무단 방치하고 있음 ※첨부: 확인서 1부	-점유자들에 대하여 도로사용료(점유일시를 확인하여 점유일로부터 부과) 부과하고 미관상 철거토록 할 것.

<건의 및 기타사항>

감사사항	현황 및 문제점	건의 사항
(시민봉사실) -등기부 등초본 발급문제	○현재 등기소에서 국민의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 등 많은 불편과 번잡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므로 주민봉사 행정, 공개 행정 지향의 취지에 서라도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민의 봉사행정에 입각하여 기관과 기관간에 협의하여 등기소 직원이 시민봉사실에 파견근무케하여 업무를 대행해 주는 방법 등의 건의를 권고.
-전산통계에 대한 사항	○타구청 일부에는 주전산기(메인 컴퓨터 시스템)가 설치되어 수기고지와 기안결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구청은 전산처리가 완벽치 않아 세금비리의 원인이 될 수 있음(특히 세수입증 증기취득세)	-95년 예산에 5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구청도 주전산기 설치를 95년 상반기에 완료토록하여 세금비리예방과 업무능률에 완벽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기구개편시 신설되는 전산운영계는 완전 기술직인 통신직으로 대처토록 할 것.
(총무과) -인사문제에 대한 사항	○94년도 6 7급 승진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의 문제점 건의 심사기준에 있어서 70%인원은 상위서열, 30%인원은 격무부서 근무, 창의적 공무원, 업무실적	-격무부서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정립해 주기 바라며, 모범 공무원 표창자는 인사고과의 반영으로 서열에 있어서 타 공무원에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시 또 우선순

감사사항	현황 및 문제점	건의 사항
	유공자로 선정함에 있어서 상위서열은 문제점이 없다고 보나 30%인원 승진심사기준에 있어서 격무부서와 모범 공무원 표창자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사료됨.	위를 주는 것은 이중으로 특혜를 주고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를 하여 추후 승진심사에 있어서는 대상공무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기 바람.
-행정동원 사항	○각 동 공히 업무과중과 각종 행정동원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이로 인한 동행정에 차질이 있음	-각동의 인원 배정이 현재까지 인구비례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인구와 동면적을 병행하여 인원을 배정할 것. -동사무소 직원을 가급적 증원해 주고 가급적 행정동원을 자제해 줄 것.
-인사문제에 대한 사항	○기피업무(부서)근무 직원을 인사상 우대 방안 강구 •대상: 총무과 8급 강석홍 •담당업무 -보안업무 -직장예비군 중대 운영 -직장민방위대 운영 -보안장비, 기자재 운용 및 관리 •내용: 상기 직원은 행정8급 직원임에도 이른바 기피업무(동사무소의 경우 방위병이 담당하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성실하고 수범적인 공무원으로 -예비군 장비인 방탄 헬멧 등 9종 350EA	-집행기관에서 인사상 고과에 반영하여 우대와 함께 표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감사사항	현황 및 문제점	건의사항
(총무과)	-민방위 장비 특수방 독면 등 3종 266EA -기타 보안장비를 평 소 철저히 운용 관 리하고 있음.	
-각 동의 창 구 수당문제	○상급관청에서는 친절 봉사하라고 외치고 있으나 타부서나 타 계열의 수당은 매년 올리면서 유독 동사 무소 창구수당은 80 년에 책정된 월 2만 원이 14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인상되지 않음.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 차원에서 타부서 와 형평에 맞도록 창 구수당을 올려 지급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 市民保社委員會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보사위원회 소관의 전반적인 구정을 감사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여 '95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1994. 11. 28. (월) ~ 12. 4. (일) 까지 (7일간)

3. 감사 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각호 해당기관
- 시민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 동사무소(22개동)

4. 감사 실시 경과

(감사반, 대상부서, 장소, 방법 등 기타)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방법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김형수	시민국	영등포	업무보고	시민보사위원회
간사: 김형기		구청	자료확인	소관전문위원
위원: 김진국	보건소		개별감사	사무국 직원(2명)
서홍선			공개질의감사	속기사(1명)
윤태봉	동사무소		현장확인	
조연제				
최락희				
최수영				
최준화				
우일현				

5. 주요감사 실시내용

(시민국)

과별	감사사항	비고
사회복지과	○ 의료보호 특별회계 ○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과별	감사사항	비고
사회복지과	○ 부랑인 단속 일용인부 사용에 관한 사항 ○ 거택, 자활보호자 심의위원회 및 이웃돕기금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장애자 복지 ○ 새마을 노임 소득사업(취로사업)	
가정복지과	○ 노인복지사업 ○ 유아교육사업 ○ 가정의례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 94주요사업 시행 ○ 불우청소년 및 소년가장 보호사업	
위생과	○ 식품위생업소의 신규허가 및 위생감찰 ○ 유기장, 세탁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 ○ 위반 위생업소 행정처리 및 청문회 제도 ○ 식품진흥기금 조성심의 위원회 ○ 예산지출증빙서	
산업과	○ 중소기업 특화 및 성장산업 육성 ○ 도시가스 안전대책 ○ 지방농민과 자매결연 및 농산물직거래 현황 ○ 석유판매업소 감독 ○ 물가대책위원회 ○ 도시가스 설치, 가스안전관리소에 관하여 ○ 정부양곡 미수금	
환경과	○ 공해감시위원 수당 관계 ○ 현장감사(폐수처리 관계, 수질관계) 강남성심병원, 제일유니버설, 한국특수금속, 유창금속, 신성특수금속, 신평기업사, 광명금속공업사, 세양세차장, 서울세차장, 내외운수(주) 세차장	
청소과	○ 정화조 관리감독 및 과태료 관계, 유지관리 ○ 환경미화원 자녀학비 보조금 ○ 쓰레기 투기단속 ○ 현장감사(환경미화원 휴게실 점검)	

〈보 건 소〉

과 별	감 사 사 항	비고
보 건 소	○순회진료 ○장애인의 보건행정 ○호골 취급지도에 관하여 ○오염입국자 처리 ○기타 사항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소관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고
사회복지과	<p>제목 : 의료보호특별회계 (현황 및 문제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94년도 예산 885,933천원에서 실제사용액의 청구액은 1,090,807천원으로 2억 1천만원의 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며 '95년도 예산 896,763천원으로 전년 10,830천원 인상을 0.98%상승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정책에 역행으로 사료됨.</p> <p>(처리 의견) '95년도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불대구차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봄.</p>	
	<p>제목 : 이웃돕기 기금 활용의 건 (현황 및 문제점) 이웃돕기 성금은 전년에 비하여 개별지원은 증가되었으나, 홍보가 덜되어 주민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어려운 가정이 긴급을 요해도, 환자가 발생하여도, 이웃돕기 성금으로써 지원을 받을 길이 희박한 실정임.</p> <p>(처리 의견) 지역통장이나 반장을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여 성금 이용을 높였으면 한다.</p>	

소관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고
사회복지과	<p>제목 : 부랑인 단속 일용 인부사용의 부당성 (현황 및 문제점) 부랑인 단속 일용인부 사용에 '93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한바 있음. 실1인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시에는 '94년 예산에도 2인으로 편성. 일용인부 임금지급, 상용인부로 상용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됨.</p> <p>(처리 의견) 예산지침에 위배됨으로 상부에 건의 시정을 요할 것이며 향후 예산상 지침에 의거 140일만 단속 인부임금을 지급하기 바람.</p>	
	<p>제목 :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심의위원회 및 이웃돕기 기금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현황 및 문제점) 상설위원회가 있으나 위원회의 본뜻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결재형식의 위원회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음.</p> <p>(처리 의견) 결재 형식의 위원회 운영이라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본뜻에 맞는 운영이 되어야 하겠음.</p>	
	<p>제목 : 장애인 복지행정에 관하여 (현황 및 문제점) 현실에 맞는 그리고 장애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p> <p>(처리 의견) 마지막 못한 형식적인 지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장애인 복지행정이 필요함.</p>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비고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비고
가정복지과	<p>제목: 어린이집 운영 관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권자(원장)가 유고시(사망, 전출)에는 제반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운영권자(원장)의 이름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반시설의 투자 및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p> <p>(처리 의견) 운영권자(원장) 유고시에는 즉시 새로운 관리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이 이관되어야 한다고 사료됨.</p>		가정복지과	<p>제목: 노인정 간판 교체 (현황 및 문제점) 노인정 90개중 기존 시립노인정에서 구립노인정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립노인정으로 간판을 바꾸지 않는 곳이 있음.</p> <p>(처리 의견) 시에서 이관된 시립노인정을 구립노인정으로 간판을 정정할 것.</p>	
	<p>제목: '94년도 주요사업 시행부진 (현황 및 문제점) 가정복지과에 속한 '94년도 주요사업이 하반기에 착수되었음.</p> <p>(처리 의견) '93년도 감사시 지적을 하였으나,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음.</p>			<p>제목: 어린이집 지도감독 (현황 및 문제점) 1.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면, 어린이 정족수와 종사자의 균형이 배분되지 않음으로써 어린이 반형성이 고르지 못한 실정임. 2. 시설기준에 맞추어 어린이 반편성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아, 유아 할 것 없이 제멋대로 지도하고 있음.</p> <p>(처리 의견) 복잡한 규제를 풀어 유아교육에 보다 성의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교육은 일원화 되었으면 한다.</p>	
	<p>제목: 장의사 영안실 비품대 파다산정 (현황 및 문제점) 비영리업체 등에서는 적절한 가격으로 산정 처리하나 일부 장의사들은 물품대를 파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p> <p>(처리 의견) 즉시 시정토록 할것</p>			<p>제목: 투자사업 착공시기에 관하여 (현황 및 문제점) 투자사업 추진업무사항이 너무 복잡하여 제도적 개혁이 필요함. 투자사업공사 착공시기가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됨. 건축과에 영선계가 있으나 가정복지과에 속한 업무담당을 두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함.</p>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가정복지과	<p>(처리 의견)</p> <p>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 착공에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투자사업(건축)은 상반기에 착공해서 12월내에 완공하도록 하여야 하겠음.</p>		위생과	<p>제목: 위생업소 위반사항 단속 (현황 및 문제점)</p> <p>영업시간 위반, 업태변경, 보건증, 무허가 업소(단속 건수의 15%이상 벌칙부여)단속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무거운 벌칙(영업정지, 영업취소등)을 가함으로써 주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발생된다고 사료됨.</p>	
	<p>제목: 불우청소년 보호 대책 (현황 및 문제점)</p> <p>불우청소년 보호대책이 미흡함.</p> <p>(처리 의견)</p> <p>불우청소년 보호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소외됨이 없도록 함이 필요함.</p>			<p>(처리 의견)</p> <p>과잉단속보다는 선도방향에서 지속적 인 단속과 가급적 영업정지, 영업취소보다 벌칙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처리하여 줄것.</p>	
위생과	<p>제목: 세탁소 폐수처리 관계 (현황 및 문제점)</p> <p>현재 세탁소 영업은 신고 사항이므로 대다수의 세탁소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임. 특히 대형세탁소의 경우 다량의 폐수방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p> <p>(처리 의견)</p> <p>대형세탁소에 대한 영업신고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제반 법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됨.</p>		위생과	<p>제목: 위생업소 행정처리 및 청문회 제도에 관하여 (현황 및 문제점)</p> <p>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의한 업주 청문회가 사실상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제도로써,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p> <p>(시정 및 처리의견)</p> <p>청문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존재에 불과하며, 업주의 처벌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청문회의 뜻이 있는데 청문회 자체가 법 절차에 대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청문회 위원을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억울한 업주가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단, 위원회 구성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기 바람.</p>	
	<p>제목: 오락실 내부 환경 오염심각 (현황 및 문제점)</p> <p>오락실 대다수 업소가 공기가 혼탁하여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으로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시정 및 처리의견)</p> <p>환경개선 필요.</p>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비고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비고
위 생 과	<p>제목: 식품위생업소 단속 (현황 및 문제점)</p> <p>식품위생업소의 단속에 있어서 과잉 단속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영세 상인에 대한 단속은 지양했으면 한다.</p> <p>(처리 의견)</p> <p>고용인을 고용치 못하고 가족을 동원한 영세업체는 단속함에 있어 신중한 처리가 요망됨.</p>		위 생 과	<p>제목: 식품진흥기금 조성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현황 및 문제점)</p> <p>식품진흥기금조성위원회가 운영이 전혀 되지 않은 점과 식품제조업자에게 용자지원을 하도록 수차 본청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자신청자는 단 한사람 뿐이라는 것은 업무상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p> <p>(처리 의견)</p> <p>담당자 또는 위원회는 연구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아서 현 실정에 맞는 행정 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제목: 일용 인부임 부당지급 (현황 및 문제점)</p> <p>예산상은 일용인부임 2인으로 편성해 놓고 실제는 1인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부족분이 발생하면 같은 운영비에 속해 있다고 해서 보관비에 충당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됨.</p> <p>(처리 의견)</p> <p>'95년 예산 편성부터는 일용인부임을 상용인부임으로 편성할 것이며 폐기물 보관비는 예산편성대로 집행해 줄 것을 요망함.</p>			<p>제목: 식품접객업 신규허가에 관하여 (현황 및 문제점)</p> <p>식품접객업 신규허가 신청이 반려되었는데도 신청자는 허가와 관계없이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음.</p> <p>(처리 의견)</p> <p>담당자 또는 위원회는 연구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아서 현 실정에 맞는 행정 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제목: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착오시정 (현황 및 문제점)</p> <p>불법 오락기 폐기처분비 지출결의서와 같이 영수증의 착오가 있음은 부당하다고 사료됨.</p> <p>(시정 및 처리의견)</p> <p>금전지출결의서와 같이 영수증수령시 확인하여 첨부요.</p>			<p>산 업 과</p> <p>제목: 도시가스 안전사항과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대책 (현황 및 문제점)</p> <p>①구민이 행정세로 보아 도시가스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②행정차원에서 특별한 안전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지 못하고 있고 특별한 방향설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임.</p>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비고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비고
산 업 과	<p>③시공회사인 (주)서울도시가스에서 시공 설치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선정, 주민들이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p> <p>(처리 의견)</p> <p>지역발전을 위하여 신규시설은 점진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지금 시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스배관 및 노출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더욱 현정세로 보아 불안한 주민들을 다 소나마 공포 분위기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구자체 안전기금을 조성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p> <p>현재로써 안전기금이 허용되지 못할 경우 조례로 정하여 기금조성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p>		산 업 과	<p>(처리 의견)</p> <p>도농간 자매결연으로 인하여 농민의 이익을 조금이나마 더해주자는 정부 시책은 높이 평가하나 소비자인 도시인이나 생산자인 농민들의 이익은 별로 효과가 없는 실정이어서, 특별 관리하여 자매결연으로서 상품이 다양한 지역을 선정 관리하도록 함이 좋을 것 같다.</p>	
	<p>제목 : 지방농민과 자매결연 및 농산물직거래 현황</p> <p>(현황 및 문제점)</p> <p>①정부 시책에 의해서 실적유지 행정 지원으로서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민간에 이익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p> <p>②자매결연의 목적이 단조로운 관계로 상품이 다양치 못하여 주민과 만남이 적어진다.</p> <p>③교통관계로 거리가 멀어 운임과 상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없어 더욱 고루 배분이 적어진다.</p>			<p>제목 : 석유 판매업소 감독현황과 단속사항</p> <p>(현황 및 문제점)</p> <p>①석유 판매업소의 용기의 용량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있음.</p> <p>②단속으로 인한 판매업소의 판매거부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더욱 큼.</p> <p>③단속하는 인력이 부족함.</p> <p>(처리 의견)</p> <p>동절기를 기해 지금 현재까지 지도 단속이 부실해 판매업소에서 용량을 부족하게 판매해 주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바,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크다면, 공무원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단속을 못하는 사항은 업무 태만으로 봄.</p>	
				<p>제목 : 도시가스 설치에 관하여</p> <p>(현황 및 문제점)</p> <p>도시가스 시설에 있어서 배선에 따른 금액산출이 복잡다단함.</p> <p>(처리 의견)</p> <p>일반 국민이 부담금을 실비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요망함.</p>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산 업 과	<p>제목: 물가대책위원회에 관하여 (현황 및 문제점) 물가대책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실정임.</p> <p>(처리 의견)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p>		산 업 과	<p>제목: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횡포에 대하여 (현황 및 문제점) 자사제품 보일러 및 가스렌지 관말 연결등은 이유없이 수월하게 하고 타사제품 보일러 및 가스렌지의 경우 관말 연결시는 시공자 등록증 사본, 시공자 자격증사본 등을 요구하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며 민원의 요소가 됨.</p> <p>(처리 의견) 자사제품이나, 타사제품이나 관말연결 (보일러, 가스렌지) 비용은 서울시 표준공사비에 의거, 시공자 등록증 사본 및 시공관리자 자격증 사본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공사 완료 할 수 있게 할 것.</p>	
	<p>제목: 가스안전관리소에 관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가스 안전검사 및 공사하는 가스관리소가 적어서, 주민의 수리 요청이 있어도 제때 수리할 수 없는 불편이 있음.</p> <p>(처리 의견) 가스안전관리소를 늘려 신속한 수리 및 안전검사를 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하겠음.</p>			<p>제목: 도시가스 시설자금 예산 확보 중지 (현황 및 문제점) '92년부터 도시가스 시설 자금을 구 예산으로 확보, 용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바 '94년부터 회수되고 있고 17억원의 예산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사료됨.</p> <p>(처리 의견) 현재 17억원의 도시가스 시설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94년 11월 30일 현재 439,000천원이 회수된바 더이상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기에 수시로 회수되는 자금으로 용자지원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더이상의 예산 편성 중지를 요함.</p>	
	<p>제목: 정부양곡 미수금에 대하여 (현황 및 문제점) 정부양곡을 '82년부터 '8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6,620가구 영세주민에게 28,963가마(60kg)를 대여한 바 '94년 10월 31일 현재 회수는 6,534가구 28,627가마(60kg) 회수되고 미회수는 86가구 336가마(60kg)가 됨.</p> <p>'94년도 회수실적을 보면 매우 부진한 상태임. 회수기간이 10년이상이 되므로 결손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인지.</p> <p>(처리 의견) 정부양곡 대여자 및 보증인의 대부분이 극빈자 행방불명 및 사망자, 전출자 등등 회수가 매우 어려우므로 결손처분이 마땅하다고 사료됨.</p>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환경과	<p>제목: 공해감시위원 수당지급건 (현황 및 문제점)</p> <p>환경오염방지에 따른 공해감시위원 수당지급에 있어 현 19명의 위촉위원을 20명으로 증원 예산을 편성하여 소집 있을 때마다 단 한사람도 빠짐 없이 전원 참석 지급했음은 부당하다고 사료됨.</p> <p>(처리 의견)</p> <p>'93년도 '94년도 10월까지 19명이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20명의 예산을 편성 지급함은 부당함으로 차후부터는 참석한 인원에만 한하여 지급함을 요함.</p>		환경과 (현장감사)	<p><u>도금업체</u> - 한국특수금속 - 유창금속 - 신성특수금속</p> <p>(현황 및 문제점)</p> <p>영세도금업체로서 자체 정화시설은 없고 폐수 및 독극물은 위탁처리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임.</p> <p>폐수처리비용이 1톤에 8만원이며 한 달에 약 45톤의 폐수가 발생되어 40~45만원의 폐수처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p> <p>(처리 의견)</p> <p>크롬도금업체의 폐수는 독극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세밀한 관찰이 요망됨. 유독물배출의 지도감독 철저.</p> <p>금도금 업체 - 신팡기업사 - 서광금속 - 광명금속공업사</p> <p>(현황 및 문제점)</p> <p>신팡, 서광금속은 폐수처리를 위탁업체에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광명금속공업사는 자가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모범적인 업체로 사료됨.</p> <p>(처리 의견)</p> <p>광명금속공업사와 같이 자가폐수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조치바람.</p> <p>그 예로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업체에게는 일부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또는 저리의 은행융자를 통하여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가 강구되어야 하겠음.</p>	
(현장감사)	<p>제목: 폐수방출업체 현장감사결과 (현황 및 문제점)</p> <p><u>제일유니버살</u></p> <p>이스트제조업체로서 악취가 심하며 폐수처리를 위탁업체를 통하여 처리한다고 하나, 폐수관이 생활 하수관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p> <p>(처리 의견)</p> <p>환경과에서는 임시폐수처리통과 생활 하수관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람.</p> <p><u>강남성심병원</u></p> <p>(현황 및 문제점)</p> <p>병원측의 설명은 1억 5천만원의 시설투자를 하여 병원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었다고 함.</p> <p>(처리 의견)</p> <p>비교적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됨. 수질검사를 실시 시민보사위원회에 보고할 것.</p>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환경과 (현장감사)	<p><b>세차업</b> (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양세차장 : 폐수처리 시설불량</li> <li>•서울세차장 : 비교적 양호함.</li> <li>•내외운수(주)세차장 : 전시적인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음. 세차후 폐수를 모래를 통하여 정수한다고는 하나 전시적인 시설에 불구한 실정임.</li> </ul> <p>(처리 의견) 수시점검을 통하여 보다 세심한 점검이 요구됨.</p>		청소과	<p>제목 : 정화조 과태료의 건 (현황 및 문제점)</p> <p>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하게됨에 따라 청소하지 않을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자의 성명이 틀리며 전 가옥주에 부과하는 사례가 있음.</p> <p>(처리 의견) 건물 번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성명을 확인하여 정확한 부과를 하기 바람.</p>	
청소과	<p>제목 : 정화조 관리감독 실태 (현황 및 문제점)</p> <p>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 청소과 위생설비계의 인원부족(계장 1명, 직원 3명) 및 전문 기술인력이 없어 정화조 관리가 형식적인 탁상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p> <p>그 예로 연 1회 정화조 일제조사시 문제가 발생되어 즉시 시정조치된 곳도 동사무소의 현장확인 복명은 "위반사항 무"라고 보고되고 있는 실정임.</p> <p>(처리 의견) 대책으로는 청소과 위생설비계의 전문인력의 보강으로 정화조관리를 철저히 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오수의 방류를 철저히 단속하여야겠음.</p>		청소과	<p>제목 : 정화조 과태료의 건 (현황 및 문제점)</p> <p>정화조 미청소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만 하였지 징수실적이 20%에 불과함.</p> <p>(처리 의견) 과태료 부과만 하지 말고 홍보하고 독촉하여, 정화조 청소함에 목적을 두고 부득이 부과할시는 100%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p>	
			청소과	<p>제목 : 정화조 유지 관리에 관하여 (현황 및 문제점)</p> <p>정화조 미청소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청소가 수년씩 누적된 소유자에 대한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p> <p>(처리 의견) 조속한 조치로 행정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하겠음.</p>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비고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비고
청 소 과	<p>제목 : 자녀학비 보조금에 관하여 (현황 및 문제점)</p> <p>환경 미화원 전원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학비 보조금으로 지급계획 해놓고 과다 불용액으로 처리함은 부당함.</p> <p>(처리 의견)</p> <p>자녀학비 보조금은 해당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함.</p>		보 건 소	<p>(처리 의견)</p> <p>각 노인정의 순회 방문의 취지에 동참하면서 실질적으로 방문 진료한 일지를 확인한 바, 불우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잘 돌보아 준다는 인상을 받았음.</p> <p>앞으로는 소외계층의 노인들을 더욱더 잘 돌보아 주고 진료혜택을 많이 주도록 순회진료를 가일층 강화해 주시기 바람.</p>	
	<p>제목 : 쓰레기 투기단속에 관하여 (현황 및 문제점)</p> <p>쓰레기 투기 단속이 소홀함.</p> <p>(처리 의견)</p> <p>쓰레기 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일조되어야 하겠음.</p>			<p>제목 : 장애자들에 대한 보건행정에 관하여 (현황 및 문제점)</p> <p>신체적으로 질병이 많고 연약한 장애자에 관한 보건행정의 기획이나 운영, 지도, 관리면에서 소홀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p>	
(현장감사)	<p>제목 : 환경미화원 휴게실 점검 (현황 및 문제점)</p> <p>영등포3동(영3동 공원옆) 환경미화원 휴게실 점검 결과 모든 시설이 미비함.</p> <p>(처리 의견)</p> <p>휴게실의 철거 또는 보수 완료후 결과보고 할 것.</p>			<p>(처리 의견)</p> <p>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장애자들이 보건소의 이용이 보다 많도록 홍보하고 기획, 운영, 지도, 관리면에서도 장애자들에 대한 불편을 덜어 주는 보건소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음.</p>	
	<p>(현황 및 문제점)</p> <p>신길6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점검결과 소화기 미비치 확인.</p> <p>(처리 의견)</p> <p>소화기 설치할 것.</p>			<p>제목 : 호골 취급에 관하여 (현황 및 문제점)</p> <p>호골 취급금지 또는 협조에 관하여 호골 취급 의료업소에 대한 조사 또는 단속 과정에서 의료업소에 대한 조사 또는 단속과정에서 의료한의원으로 부터 행위 이전에 각서를 받은 행정은 권위주의나 월권이 잔재된 행정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함.</p>	
보 건 소	<p>제목 : 순회진료에 대하여 (현황 및 문제점)</p> <p>현재 각동의 노인정을 순회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하여 시정을 하고자 함.</p>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비고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비고
보건소	<p>(처리 의견)</p> <p>호골 취급금지 협조 홍보로써 지도 행정을 하고 규정이나 법규 위반시에 각서 등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보건 행정이 되었으면 함.</p> <p>제목 : 오염지역 입국자 처리실적 (현황 및 문제점)</p> <p>금번 행정감사 결과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오염지역 또는 유행지역에서 입국한 9,535명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건강 상담을 실시 확인하고 그중 2명의 보건자를 색출하여 보건행정과에 통보함으로써 해외여행객을 통한 콜레라환자 발생에 대한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내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됨.</p> <p>(처리 의견)</p> <p>제한된 인원으로 철저히 검진하여 입국자 9,535명중 2명의 보건자를 색출한데 대하여 대단히 칭찬하고 싶으며 격려하는 바입니다.</p>		사회복지과 <건의서>	<p>(처리 의견)</p> <p>우리구 예산은 매년 증가되는 실정이며 물론 영세민이 감소하고 있다는 행정상의 통계는 사실이겠지만 영세주민의 취로 희망가구가 의외로 많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예산을 증액하여 실질적인 영세민이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복지사회로 가는 과도기에 건의합니다.</p>	
사회복지과 <건의서>	<p>제목 : 취로사업에 대하여 (현황 및 문제점)</p> <p>현재 취로사업 예산의 절감과 희망가구의 감소로 예산과 인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p> <p>그러나 지역에서는 많은 취로사업을 원하는 실정임.</p>				

###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 都市建設委員會 -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전반적인 구정을 감사함으로써 區政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여 '95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2. 감사기간

1994. 11. 28(월) - 12. 3(일)까지 (6일간)

#### 3. 감사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각호 해당기관

- 도시정비국(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 건설국(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 동사무소(22개동)

#### 4. 감사실시 경과

(감사반, 대상부서, 장소, 방법 등 기타)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방법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 김명환 간사 : 안주영 위원 : 권혁필 김동기 배기환 심정기 이윤중 양운섭 이용주 이중식 최규락	도시정비국 건설국 동사무소	영등포구청	업무보고 자료확인 개별감사 공개질의 조사 현장확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전문위원 사무국직원(2명) 속기사(1명)

#### 5. 주요감사 실시내용

과별	감사사항	비고
주택과	○ 무허가 건물정비 현장 확인 • 신세계 옥상 가설물 • 경방필 옥상 가설물	

과별	감사사항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 7호선 무허가 건물명단 및 보상계획 일정표</li> <li>○ 신길 2-2 재개발구역 장기미준공 건물 현황 제출</li> <li>○ 민영주택 건설 사업승인(대림동 692-6호의 12필지, 현대산업개발(주) 관련서류 제출</li> <li>○ 무허가 건물 단속 형평성을 결여한 장훈중고등학교 및 장훈여상의 불법건축물 조치사항</li> <li>○ 대림3동 60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요청 관련서류(가칭: 대림 3-2지구)</li> <li>○ 대림3동 603-66호 구유재산 매각(현황) 관련 협의사항(재무과→주택과)</li> <li>○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항</li> <li>○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내역</li> <li>○ 무허가 건물 현황</li> <li>○ 94 무허가건물 위험건축물 철거현황</li> <li>○ 무허가건물에 관한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li> <li>○ 무허가건물 정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등포동 4가 134-1 조유연(목화회관)</li> <li>• 문래동 6가 34 김관수(의성기계)</li> <li>• 대림3동 783-5 대영기계</li> <li>• 603 박영일</li> <li>• 714 윤덕기</li> <li>• 대림1동 700-9 광정순</li> <li>• 신길5동 353-635 이성현</li> </ul> </li> </ul>	
도시정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질변경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길동 432-1의 18필지</li> </ul> </li> <li>○ 야립간판 행정소송 수행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법원 판결사항 확인</li> </ul> </li> <li>○ 94 옥외광고물 민원서류 처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의도광장 엑스포 광고물</li> </ul> </li> </ul>	

과 별	감 사 사 항	비고	과 별	감 사 사 항	비고
도시정비과	허가 기간 • 여의도 국회의원 현수막 제거 철저 ○ 연도별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처리 사항 ○ 시민계시관 관리관계 ○ 옥상광고물 허가 관계철 ○ 불링핀 관계 ○ 도시계획 용역 현황 자료 제출 ○ 체비지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 및 관리 적정여부 ○ 신길동 414-36, 대림동 440-62간 도로결정(B=8M, L=50M)을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 도로점용료 납입필 통지서 제출 • '92. 2. 3월분 • '93. 3. 4월분 ○ 옥상간판 현황 제출 간판 도로점용 부과 현황		지역교통과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현황 ○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촉구 ○ '94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징수현황	
지역교통과	○ 각동별 주차단속실적 자료 요구 ○ 의견진술 처리 미부과 처리지침 자료요구 ○ 신길4동 사러가시장앞 좌회전신호등 설치 요구 ○ 파자쇼핑 노상주차장 폐쇄 관련 자료 요구 ○ '93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 현황 • 발급자명단제출 : 6명 ○ 자동차운송알선업 등록사항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역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 납부거부 유·무 확인 • 부과·징수 문제점 ○ 지역교통 종합 대책 ○ 교통불편 신고 처리 현황 ○ 법인 및 개인차고지 미확보		건축과	○ 건축물 부설 주차장 확인 • 당산동 74번지 2의 5건 ○ 당산동 30번지 2의 유통상가 허가·준공 적정 여부 ○ 보건소 신축내역 및 도면 적정 여부 검토 ○ 위법건축물 현황 • '94 중·대형 건축물 위법 사항 • 대형건축물 현장조사 : 신세계백화점, 경방필백화점, 대림산소빌딩(문래동 5가 2), 신세계price club (양평동 3가 65) ○ 동청사 공사현황 자료 제출 요구 ○ 복지시설 발주관계 서류 검토 ○ 보건소 신축공사 냉난방 부하계산서 제출 요구 ○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건설관리과	○ 여의도순복음교회 지하보차도 도로굴착 사항 • 토목과 처리사항으로 토목과 이첩 ○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관계 ○ 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관계 ○ 양평동 창고 정리 상태 ○ '92~'94년도분 도로점용(광고물) 대장과 영수증 대조	
			토목과	○ 양평1동 164-116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구간 아스콘 두께 확인 ○ 대림동 776 일대 보도 정비공사 확인 ○ 도로굴착 승인대장 검토 ○ 신길로~해군본부간 도로개설공사 현장확인	

과 별	감 사 사 항	비고
하 수 과	○양평2동 6가 38-1간 하수 도공사 도로복구 현장 점 검	
공 원 녹 지 과	○문래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에 대하여 ○문래공원 주차장신설 현황 설명 ○신길근린공원 하자 수목에 대하여 ○대방(메나골) 근린공원 입 안조성 계획에 대하여 ○신길근린공원 조성지관리 및 하자상태 현장 확인 ○어린이공원 현황 및 시설물 정비 공사관계철 제출 ○공원현황제출 및 '94공원분 야 예산집행 및 '95 공원분야 예산안 제출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 공 사관계철 확인점검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소관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고
주 택 과	<p>제목: 가설물 단속철저 (현황 및 문제점) 콘테이너형 가설물 단속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처리 의견) 콘테이너형 무허가 가설물이 구내 상당히 많이 있으며 단 속실적 보고는 받은 바 있으나 행정지시 및 조치한 바 없어 형식적 단속으로만 행하고 있 어 철저한 단속 요망</p> <p>제목: 환지청산금의 법적용 (현황 및 문제점) 환지청산금 평가방법이 도시재 개발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 하고 부당하게 서울시가 서울 시예규490 사무취급규정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됨.</p>	
소관부서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비고
도시정비과	<p>(처리의견) 청산금의 산정기준은 도시재개 발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공사착수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 된 비용으로 가산하는 방법으 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산금 사무취급규정으 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게 적 용된 것임.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규정으로 적용 시정할 것을 요구함.</p> <p>제목: 불법 공작물 지적사항 미 이행 (현황 및 문제점) 당산동 4가 32-6 영신교회 옥상에 설치한 불법공작물에 대한 문제점은 '93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인 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처리의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한 사안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므로 특별한 조치가 있 어야 된다고 사료됨</p> <p>제목: 불법간판 과태료 지연 (현황 및 문제점) 불법 간판 부과금 고지가 시 급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처리의견) 불법 간판으로 지적된 350건의 과태료가 현재까지 고지 안되 어 업무에 태만한 점이 보이고 있어 신속 처리요망</p> <p>제목: 구유재산 관리 철저 (현황 및 문제점) 신길동 433-8호외 9필지에 대 해서 토지 형질변경으로 토지 주로부터 우리구에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를 등기 완료하고도 도시정비과에서 주무과로 통보 하지 않고 있어 구유재산 관</p>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도시정비과	리에 헛점이 많다고 사료됨. (처리의견)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빠른 시일내에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됨.	
지역교통과	<p>제목: 주차관리 철저 (현황 및 문제점) 주차위반(주차구획선 밖)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고 방치 (처리의견) 단속처리 할 것. *사진 따로 붙임.</p> <p>제목: 업무태만 조치 (현황 및 문제점) 사업용 자동차 부대시설(차고지) 없는 회사 공문 지연 처리 (처리의견) 사업용 자동차 부대시설(차고지) 없는 회사처리증 '94. 1. 20 청문회를 하였으나 과태료부과 처분에 관한 공문을 9월에 지연 발송 처리하여 공무원으로 직무 태만한 사례 *경유서 따로 붙임</p> <p>제목: 예산 미사용 이유 (현황 및 문제점) 주차장 특별회계 50억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 (처리의견) '93. 1. 1일부터 시행된 특별회계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미사용 되어 주차장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니 시급히 시행할 것.</p> <p>제목: 체납과태료 징수 독려 (현황 및 문제점) 과태료 체납 징수 저조 (처리의견)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 실적이 303,052건 9,229,080천원이 체납되어 있는 바 체</p>	
소관부서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납징수에 적극적인 자세요망</p> <p>제목: 차고지 증명과 주차요금 징수대책 (현황 및 문제점) 개인택시 허가시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개인택시 소유주의 주거지가 아닌 10km이내 주차장을 허용함으로 차고지는 형식적으로 허가내기 위한 요식행위와 같은 것으로 차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 (처리의견) 개선책을 강구할 것.</p> <p>제목: 아파트내 주차요금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아파트단지내를 유료주차장으로 개설시 기본지침 없이 APT운영회에서 이용요금을 원칙없이 부과 추징함으로 규정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조치요함. (처리의견) 금액을 조정 시정하겠음. &lt;예&gt; 1회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2,000원 지불하고 1시간 초과시에 30분에 1,000원을 받음.</p> <p>제목: 과태료 징수현황 (현황 및 문제점) '90. 12. 1일부터 '94. 10. 31일까지 650,451건의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중 징수내역: 10,918,942천원, 미수내역: 9,229,080천원 징수실적 54% 저조, 저조이유는 징수계직원 5명이 항상 타업무 차출로 징수 업무 소홀 (처리의견) 세수에 관계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징수계 업무에 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요망. &lt;징수계획&gt; 1. 자동차 압류방법 2.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p>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지역교통과	3. 일정기간 징수독려등 3가지의 징수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건축과	들이 결재 공람했음에도 1994. 8. 16일로 건축 58550-6080호로 240곳 건축주에게 시정공문을 발송하여 1994. 9. 17까지 2단 주차기를 철거 및 고장방치시 위법사항으로 간주 형사고발 및 단전단수와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공문을 발송, 불필요한 2단 주차기를 구입 및 수리하여 시정한 업주가 많으며 피해 또한 크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오류를 범하여 행정의 신뢰를 잃는 처사로 사료됨.	
건축과	<p>제목: 용도의 사용조치 (현황 및 문제점) 영등포2동 441번지 경방필 백화점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의무실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기계실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음 (처리의견) 시정지시 요함 * 사진파로 붙임</p>		건축과	<p>조속한 시일내에 건축 58550-6080호 240곳 건축주에게 2단주차기 철거 및 고장에 대한 것은 시정 유보하여도 가하다고 공문 재발송해 주어 피해를 덜어줌이 가하다고 사료됨.</p>	
	<p>제목: 건축사전공사 건 (현황 및 문제점) 양평동 3가 1-1 지하1층 지하4층중 증축 20평이 동사무소에서 무허가 사전공사로(30%) 진행됨에 철거요청하자 '94. 2. 3일 주택과에서 철거하러 가던 중 '94. 2. 2일자로 건축허가가 나온 점 (처리의견) 사전공사에 따른 건축주, 설계사를 맡은 설계사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를 결과 보고 바랍니다.</p>		건축과	<p>제목: 하자보수 철거 (현황 및 문제점) 보건소 하자 ① 지하실 빗물처리 잘못으로 지하바닥 타일 하자발생 ② 지하실 벽체 크랙이 심함 (처리의견)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지시할 것.</p>	
	<p>제목: 감사지적사항 교육 철거 (현황 및 문제점) 주차장법 제19조의 4 및 건축법 제69조에 의거 원상회복 등 지시한 미이행 부설주차장에는 고발 및 관계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로 위반사항중 2단 주차기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고장방치 제거등 지적된 것에 대하여 주차기획 담당관실에서 별도 개선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시정을 유보하라는 서울시 감사 16800-778호 시행 1994. 8. 1 자로 건축과장 앞으로 수신되어 실무자</p>		건축과	<p>제목: 건축관계 민원 처리결과 (현황 및 문제점) ① 행정소송 접수현황 ② 건축진정 전체 민원 대비 (처리의견) ① 없음 ② '93년도 대비 실제 22% 증가 발견 (건축허가 비율로 비교할 것)</p>	
			건축과	<p>제목: 중과실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확보 (현황 및 문제점) 지하철 7호선 7-23공구간 건축</p>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건축과	허가 잘못으로 증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증정계대상 공무원에게 구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사료됨. (처리의견) 증과실을 한 공무원을 재조사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해 시민의 혈세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사료됨.		건축과	(처리의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현장감독 철저를 기하도록 의견제시 또 앞으로 관급공사 설계시 이중창으로 하도록 의견 제시	
	제목 :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신길동 370-5호 김완태의 7인의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인하여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가 많을 뿐 아니라 당시 건축감리자가 사망 또는 행방 불명이 되어 준공필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됨. (처리의견) 우리구 건축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지의 건축주에게 사후처리에 관한 행정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서 준공검사에 크게 기여토록 해야 된다고 사료됨		건설관리과	제목 : 압류예고서 발송 (현황 및 문제점) 광고용 점용료 체납건수 - '92년도 125건 - '93년도 184건 - '94년도 348건 - 총 657건 금액 ₩ 125,956,790원 압류예고조치 ('92년도 '93년도) (처리의견) '95년 2월 28일까지 독촉장 및 압류예고서 송달	
	제목 : 세외수입 발굴 적극 (현황 및 문제점) 비교적 양호하나 세외수입 발굴이 아직도 미흡함을 지적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처리의견) 세외수입 발굴에 총력을 기하도록 의견제시			제목 : 물자관리 철거 (현황 및 문제점) 건설관리과 창고관리 소홀 (처리의견) '94년도 12월 3일까지 정리 * 사진 따로 붙임	
	제목 : 관급공사 철거 (현황 및 문제점) 관급공사에 있어서 자체설계 및 감독소홀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음을 지적 또 관급공사시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설계하는 것은 설계면에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을 지적			제목 : 도로상 장애물 철거 (현황 및 문제점) 영등포 4가 91, 92번지 도로상에 경비관리실 BOX 방치하고 있음 (처리의견) 철거 조치할 것	
				제목 : 인도상 적치물 정리 (현황 및 문제점) - 문래2동 문래자동차 공업사 골목 비창물유 사무실 벽 주차금지 구역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곳에 깔판 11 무더기가 적재돼 있음 - 영3동 파천교 굴다리 밑에 주차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안되고 있음. - 파천교 부근 중앙비 부품 가게 앞에 쇠뭉치를 방치하여 차량소통에 방해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건설관리과	(처리의견) 빠른 시일내에 정비 요망		건설관리과	1. 부과통지서 내용 2. 영수증 첩 3. 세액 입금내역 등 세가지의 장부기재가 확일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나 각 1건의 서류 및 장부로 되어 있어 관독자체가 어려운 상태임 (처리의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후관리 시급	
	제목: 파천교 주변 정리요 (현황 및 문제점) 파천교 주변 도로 노상방치 물건 및 무허가 건물 방치 *사진따로 붙임 (처리의견) 정기적인 단속과 정비 필요			토 목 과	제목: 도로 굴착 복구비 미징수 (현황 및 문제점) 도로굴착 복구비 징수에 관해 상수도 사업소 미징수액이 726,139,896원이나 됨 (처리의견) 이에 대해 시급히 징수할 것이며 간접복구비 사용에 있어 직접복구비에 관련되는 도로를 같이 간접복구비를 사용하여 포장공사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목: 육교시설 관리 소홀 (현황 및 문제점) 육교 관리소홀로 철재난간이 부식되어 감으로 앞으로 위험이 발생될 우려를 지적 (처리의견) 각동 근접동에 위임하여 사후관리 철저토록 의견제시 하였음		제목: 신길4동 터널현장 답사시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신길4동에서 해군본부 터널공사 감사 (처리의견) 좌·우로 차도가 너무 협소하여 보행자들이 위험성이 많음(3m 10cm)		
	제목: 대형건물 폭파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라이프 폭파 현장 문제점 -폭파는 잘됐으나 민원야기 주변 유리창 등 파손 (처리의견) 라이프 폭파현장의 민원야기 및 피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함. (덧쇠우기, 그물 등)		제목: 신길4동 터널문제 (현황 및 문제점) 1. 터널내에 보도(인도) 없음 2. 가드레일 설계가 너무 길어 중간 지점에 통로 요망 3. 터널위의 차도가 너무 좁음 (사고위험 있음) (처리의견) 1. 인도확보 2. 가드레일 3m 절단 요망 3. 터널위 도로 4m 확보 요망		
	제목: 대형건물 폭파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여의도 라이프빌딩 폭파 현장 조사 (처리의견) 상가와 라이프 본사건물 사이가 16cm가 떨어져 있는데 안전장치를 철저히 했어야 옆건물에 피해가 없었을텐데 안전장치 미비로 피해가 컸음. 앞으로 관청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시 보다 철저한 안전장치 요망		제목: 장부 기재사항 (현황 및 문제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하수과	<p>제목: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 철저 (현황 및 문제점) 양평6가 1번지-83번지 도로상 하수관 공사시 시공업체의 보수작업 불량 2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침하되어 시정조치토록 한 결과, 군데군데 땀질로 보수하여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처리의견) '95년도 12월중 전구간 보수토록 지시 *사진 따로 붙임</p>	
	<p>제목: 하수공사 매립시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지하에 매설물이 많아 하수도 공사시 어려움이 많고 더구나 하수도관의 매립시 굴절부분이 많고 높낮이가 틀린가 하면 관속에 상수도관이 통과되어 있어 준설은 물론 물의 흐름을 방해한 바 침수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처리의견) 과감히 장애물을 이설할 것이며 하수도관이 지하에 곧 바르게 매립될 수 있는 길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p>제목: 우리구 하수관 도면 제작요 (현황 및 문제점) 전체의 하수관 도면이 없음으로 하수도 유지관리를 못하고 다른 지하 매설물 공사와 연관이 안되므로 예산낭비 및 종합적 계획을 세울수 없음 (처리의견) 연차적으로 계획수립 시행하기 바람</p>	
	<p>제목: 공사비 낭비 (현황 및 문제점) 신길4동 사무소-파자상가간 하수도 공사가 각종 장애물로 인해 공사비 4,600만원이 낭비된 사실이 있는데 철저조사 후 착공 요망</p>	
하수과	<p>(처리의견) 하수도 공사 구간 위치를 변경하여서라도 우리 관내 신길 지역의 수방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재시공토록 조치 요함.</p>	
공원녹지과	<p>제목: 녹지대 쉼스관리 철저 (현황 및 문제점) 녹지대 쉼스 훼손부분 및 녹지대 관리 소홀 (처리의견) 녹지대 청소는 12월 1일중 완료하고 훼손부분에 대하여는 '95년도중에 보수하기로 시정 조치 *사진 따로 붙임</p>	
	<p>제목: 고사목에 대한 대책 (현황 및 문제점) 국회앞 양측분리 녹지대 정비 공사의 수목이식 공사중 잣나무의 고사목 150주에 대한 대책 (처리의견) '95년 3월말까지 하자 이행 바람.</p>	
	<p>제목: 수목관리 철저 (현황 및 문제점) 신길5동 근린공원내 조성한 수목이 상당수 죽음. 나무관리 잘해야 할 것임 (소나무 등 약 30-40그루 죽음) (처리의견) -하자보수 조치할 것을 요함 -수목관리에 대하여 죽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요망함</p>	
건설국	<p>제목: 명예감독 활용 방안 (현황 및 문제점) 동 소규모 지역사업 현황(명예감독관 참여) 확인 하였으나 잘 모르고 있음 (처리의견) -형식적으로 명예감독관 임명 -준공시 명예감독관 날인요</p>	